

뉴욕 직업소개소 법

구직을 위해 직업소개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뉴욕시의 직업소개소는 반드시 소비자 보호국(DCA) 면허를 소지하고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개소의 DCA 면허를 확인하십시오.

직업소개소 법

일반 상법 11조에서 발췌

§ 178. 채권에 관한 소송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 법원에 제기된 모든 청구 또는 소송은 해당 면허가 있는 사람이 백철심질 조항에서 정한 채권에 손해를 입은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에서 다른 손해 배상 청구로 양도 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명시된 위약금이 아닌 원고가 청구한 손해 배상액은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관할에서 결정합니다. 감독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을 대신하여 채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도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주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보증인을 소환합니다. 소환장은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거주한 마지막 우편 주소와 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있는 해당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장소로 송부해야 합니다.

§ 181. 계약서, 근로 조건 설명서 및 영수증

직업소개소는 의무적으로 모든 신청자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1. 모든 계약서의 원본 해당 소개소와 신청자 사이에 계약된 것으로 계약서에는 이 조항의 백팔십오 및 백팔십육항의 규정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명시한 진술을 포함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2. 클래스 “C” 극단 고용:

(a) 이러한 공백 계약서는 우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정이 상급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계약서는 예술인이 극단 직업소개소에 지불하고 이 조항에 첨부된 백팔십오항에 부합하는 전체 수입료 또는 수수료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계약서는 또한 예술인의 이름, 계약한 서비스의 유형 및 수입료 또는 수수료의 지불에 관련된 모든 근로 조건에 덧붙여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극단 직업소개소의 면허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극단 직업소개소는 예술인과 맺은 모든 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하고 각 계약서의 사본을 예술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b) 계약서와 별도로 소개소는 특정한 일을 위한 모든 오디션 또는 인터뷰마다 예술인에게 해당 일에 지원한 예술인의 이름 및 주소, 요구되는 서비스, 오디션이나 인터뷰 이전에 보상이 있는 경우 예상되는 보상 요율 및 오디션 또는 인터뷰에 앞서 소개소가 알고 있는 기타 해당 일에 대한 물질적 근로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전자 통신을 통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3. 그 외 모든 고용(클래스 “A” 및 “A-1” 고용을 포함하여)의 경우 각 계약서는 다음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용에 신청자가 지원하는 대상의 이름 및 주소, 고용주의 이름, 주소,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 회사 주소(들), 수행할 서비스의 종류; 예상 급여 또는 보상; 일별 예상 근무 시간 및 주당 근무일; 예상 급여 또는 보상에 기반하여 신청자가 지불하는 소개소 수수료; 직원에 대한 모든 조항 및 주택, 건강 보험, 건강 관리, 병가, 휴가 및 퇴직 급여를 포함하여 해당 조항과 관련된 비용; 해당 일이 정규직인지 또는 임시직인지 여부, 예상되는 근무 기간, 해당 신청자의 고용을 승인하는 사람의 이름 및 주소; 해당 소개소가 위치한 시, 동네 또는 마을 밖에서 근무가 필요한 경우 교통 비용; 만약 해당 일자리가 조건부로 수수료 지급 형식이라면, 신청자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있는 조건은 신청자가 서명한 10포인트 유형의 별도 동의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a) 이 단락은 클래스 “C” 극단 고용을 제외한 모든 클래스의 고용에 적용됩니다. 직업소개소는 각 신청자에게 계약서별로 계약의 근로 조건을 요약한 별도의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근로 조건”으로, 해당 문서는 계약서가 아니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근로 조건은 신청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분명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어와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문서는 가능한 기술적인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b) 근로 조건은 감독관이 지정한 모든 서식을 따라야 하며 감독관이 결정한 방식으로 직업소개소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식을 개발할 때, 감독관은 해당 서식에 공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c) 감독관은 이 섹션의 조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규칙 및 규정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d) 직업소개소는 감독관이 제공한 모든 서식의 비영어권 부분의 실수나 누락에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모든 수수료, 보증금, 보수 또는 비용에 대한 영수증: 해당 신청자로부터 해당 소개소가 받은 이 같은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인쇄 또는 수기로 신청자의 이름, 직업소개소의 이름 및 주소, 해당 수수료, 보증금, 보수 또는 비용 또는 그 부분의 금액과 날짜, 금액이 지불된 목적 및 해당 금액을 수령한 사람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사 또는 가정부 구직 신청자가 주 외부에서 모집된 경우, 영수증에는 이 조항의 백팔십사 섹션의 복사본이 인쇄되어 있거나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제공된 클래스 “C” 극단 고용을 제외하면, 영수증은 금액을 지불받은 사람의 서명 바로 위 상자에 굵은 대문자 체로 다음 내용이 명시해야 합니다. “직업소개소는 귀하가 수락한 직업에 귀하를 소개하기 전에 구직자인 귀하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일을 수락하기 전에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불법인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7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클래스 “C” 고용의 해당 영수증은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극단 직업소개소는 예술인인 귀하에게 귀하가 수락한 직업에 귀하를 소개하기 전에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단 직업소개소는 기존 또는 사전 고용 계약서의 협상 또는 재협상에서 귀하를 대변한 이후 수수료를 예술인인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불법인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환불받게 됩니다.”

6. 완성된 원본 또는 원본의 복사본: 모든 계약서, 근로 조건 설명서, 영수증 및 기타 신청자가 받은 문서의 원본 또는 원본의 복사본은 계약이 맺어지거나 지불이 이루어진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직업소개소에 보관되어 감독관 또는 적절히 권한을 받은 대리인 또는 검사관이 감독관의 요청에 따른 조사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의

기타 조항이 있어도 신청자가 지불하는 금전적 보상은 이 조항의 백팔십오 섹션의 8번에 명시된 수수료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 185. 수수료

1. 수수료가 허용되는 상황.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와 서면 계약서의 조건에 따른 경우가 아니거나 해당 구직자를 고용주에게 추천하거나 해당 고용주를 구직자에게 추천할 책임이 있었기에 해당 고용주에게 그 구직자가 고용된 결과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클래스 “C” 고용을 제외하고 수수료 또는 기타 보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a) 소개소가 예술인을 고용주에게 소개할 책임을 진 후 또는 해당 고용주를 예술인에게 소개할 책임을 진 후에 해당 고용주가 그 예술인을 고용한 경우; 또는 (b) 소개소가 기존 또는 이전의 고용 계약의 협상 또는 재협상에서 예술인을 대변하여 그 결과로 예술인이 협의가 이뤄진 또는 제힘의된 고용 계약을 하게 된 경우. 이 단락에 따라 클래스 “C” 고용에서 직업소개소는 예술인에게 이 조항의 이 섹션과 섹션 백팔십육의 조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유형의 배치 또는 고용에 대해 여기에 제공된 최대 수수료는 구직자에게 청구될 수 있으며 유사한 수수료가 제공받은 고용주에게 부과될 수 있지만, 클래스 “B” 고용에 관련하여 구직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의 1.5 배인 수수료가 고용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와 협의에 따라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구직자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이 섹션의 네 번째 항목에 신청자가 수수료를 청구받지 않는다고 정의됨에 따라 클래스 “A”, “A-1” 및 “B” 고용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면허 소지자에 의해 고용주에게 청구된 수수료는 고용주와 직업소개소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주 또는 구직자로 등록하는 것에는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2. 수수료 규모; 지불 일정. 구직자에게 청구된 전체 수수료와 고용주에게 청구된 전체 수수료는 상기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단일 고용 또는 업무에서 이 섹션에 열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수수료는 이 조항의 섹션 백팔십육항에 따라야 합니다. 본 문서에 명시된 경우 및 클래스 “C” 고용을 제외하고, 직업소개소는 미국 대륙에 고용되어 주급을 받는 신청자에게 고용 첫 십 주 동안 주말마다 지급받는 10회 균등 분할금보다 큰 비율의 수수료나, 5회 균등 분할금으로 더 낮은 빈도로 임금을 받는 경우, 첫 다섯 번의 급여마다 또는 십 주간의 기간 중 더 긴 기간 내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의 수수료는 고용주와 소개소 간에 다르게 협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자의 고용이 시작된 시점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3. 보증금, 선납 수수료. 직업소개소는 모든 신청자에게 어떤 보증금이나 선납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4. 고용 유형.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청구하는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목적으로 고용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클래스 “A” – 가사, 가정부, 비숙련 또는 훈련받지 않은 노동자 및 농업 종사자를 포함한 인력;
클래스 “A1” – 비전문 숙련 또는 기술 산업 노동자 또는 정비공;
클래스 “B” – 상업, 사무직, 실무직, 관리직 및 전문직, 미국 대륙 밖의 모든 고용 및 클래스 “A”, “A1”, “C” 및 “D”를 포함하지 않는 기타 고용;
클래스 “C” – 극단 관계자;
클래스 “D” – 교육법의 백삼십구조에 정의된 간호 관계자.

5. 수수료 상한: 클래스 “A” 고용 배치에 대한 전체 수수료는 일체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첫 달 전체 급여 또는 임금에서 아래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식사 또는 속소를 제공하지 않는 곳.....	10%
근무일 당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곳.....	12%
근무일 당 두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곳.....	14%
근무일 당 세 끼의 식사와 속소를 제공하는 곳.....	18%

고용 계약에 모든 당사자가 고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서로 이해하거나 동의한 경우 전체 수수료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 또는 임금의 각 십 퍼센트, 십이 퍼센트, 십사 퍼센트 또는 십팔 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수료 상한: 클래스 “A1” 고용 배치에 대한 전체 수수료는 고용 계약의 모든 당사자가 고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십 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이해하거나 동의한 경우 한 주의 임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 계약의 모든 당사자가 고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십 주 이내에 이해하거나 동의한 경우 전체 수수료는 실제로 수령한 임금 또는 급여의 십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수수료 상한: 클래스 “B” 고용 배치에 대한 전체 수수료는 첫 달 전체 급여 또는 임금에서 아래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첫 달 월 급여 또는 임금

\$750 미만.....	25%
\$750 이상 \$950 미만.....	35%
\$950 이상 \$1,150 미만.....	40%
\$1,150 이상 \$1,350 미만.....	45%
\$1,350 이상 \$1,500 미만.....	50%
\$1,500 이상 \$1,650 미만.....	55%
\$1,650 이상.....	60%

그러나 직무 위탁 기준에 따르거나 인출금 계정 및 수수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고용인 경우, 전체 수수료는 위 명시된 백분율을 기준으로 고용주가 추정한 첫해 예상 소득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합니다.

고용 계약에 동의한 모든 당사자가 고용이 시작된 시점부터 넉 달 이내에 이해하고 동의한 경우 전체 수수료는 이 항목에 명시된 공식의 오십 퍼센트 또는 실제로 수령한 임금 또는 급여의 십 퍼센트 중 더 적은 것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수수료 상한: 클래스 “C” 고용 배치에 대한 전체 수수료는 단일 계약의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의 십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케스트라 고용 또는 계약 및 오페라 그리고 콘서트 분야의 고용 또는 계약의 해당 수수료는 보상의 이십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수수료 상한: 클래스 “D” 고용 배치에 대한 전체 수수료는 단일 계약의 경우 아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사실 간호 업무의 경우.** 해당 계약의 첫 십 주 동안 매주 수령한 급여 또는 임금의 오 퍼센트이며, 이러한 수수료는 매 주말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그 외 모든 간호 업무의 경우.** 첫째 지급될 것으로 계산된 한 해의 급여 또는 임금이 이전 오백 달러 이상인 경우 전체 수수료는 해당 급여 또는 임금에 아래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첫 주 급여 또는 임금의 금액입니다.

해당 첫째 급여 또는 임금

\$2,500 이상 \$3,000 미만.....	2.5%
\$3,000 이상 \$3,500 미만.....	3%
\$3,500 이상 \$4,000 미만.....	3.5%
\$4,000 이상 \$4,500 미만.....	4%
\$4,500 이상 \$5,000 미만.....	4.5%
\$5,000 이상.....	5%

10. 반대로 기타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청구되거나 징수되지 않는 경우는 이 조항의 백철십이조에 따라 소개가 진행된 시점에 직업소개소에 면허가 없는 경우입니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중, 계약 성사 당시 또는 소개가 진행된 시점에 유효한 면허가 없는 직업소개소와 맺은 모든 협의 또는 계약은 법원에서 무효화합니다. 단, 직업소개소가 그 면허를 유지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또는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에서 사무적 실수 또는 지연으로 인한 경우 법원은 해당 계약은 무효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186. 수수료 환불

1. 과도한 수수료: 이 조항의 항목에 반하거나 초과하여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을 징수하거나, 받거나, 유지하는 모든 직업소개소는 수수료 또는 그 초과분을 요청을 받은 지 열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2. 보고 실패: 구직자가 고용을 수락했으나 이후 근무 보고에 실패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청구된 전체 수수료는 이 조항의 백팔십오 섹션에서 허락하는 최대 수수료의 이십오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직자가 고용을 수락했으나 근무 보고에 실패하는 경우, 고용주에게는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3. 고용인의 잘못 없이 고용 종료. 구직자가 고용을 수락하고 근무를 보고하였고, 이후 해당 고용이 고용인의 잘못 없이 종료된 경우, 해당 고용인 및 고용주에게 청구된 전체 수수료는 각각 해당 고용인이 수령한 임금 또는 급여의 십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의 백팔십오 섹션에서 허락하는 최대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용인이 이 주가 아닌 주에서 모집된 가사 또는 가정부 고용인이라면 고용주의 수수료는 실제로 수령한 임금 또는 급여의 삼십삼 점 삼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그 외 모든 고용 해지의 경우: 구직자가 고용을 수락하고 근무를 보고한 후 그 외 기타 상황에 의해 고용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고용인과 고용주에게 청구된 전체 수수료는 해당 고용인이 수령한 급여 또는 임금의 오십 퍼센트를 초과해선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의 백팔십오 섹션에서 허락하는 최대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직업소개소를 이용할 때 알아 둘 사항

나의 권리 바로 알기

서명란에 서명하기 전에, nyc.gov/dca에서 구직자의 권리 헌장을 읽어보고 중요한 법률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수수료 및 환불

직업소개소에서 귀하에게 직업을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업을 수락하기 전에 수수료를 냈거나 법정 한도를 벗어나는 금액을 낸 경우, 환불을 요구하여 7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근로 조건 설명서 및 영수증

소개소에서 서명한 계약서의 사본, 계약서를 요약한 근로 조건 설명서 및 모든 지불 금액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본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최저임금

현재 고용 중이며 최소한 뉴욕주와 연방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에 소개되어야 합니다. nyc.gov/dca 및 labor.ny.gov를 방문해 알아보십시오.

불만 사항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dca를 방문하여 DCA에 불만 사항 신고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NYC™ Consumer Affairs

🐦 📘 📷 | @NYCDCA



Printed on 30% post consumer recycled paper

08/2019